

# 규정/REGULATION

## MONTGOMERY COUNTY PUBLIC SCHOOLS

관련 조항: ACA, ACA-RA, ACI, ACH, ACH-RA, GKA-RA  
 책임 사무실: Office of District Operations; Office of Human Resources and Development

### MCPS 직원의 Title IX 성희롱 조사 Investigation of Title IX Sexual Harassment of MCPS Employees

#### I. 목적

MCPS 직원의 Title IX 성희롱 불만신고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한 절차 제공하기 위하여.

#### II. 배경

*성희롱(Sexual harassment)*은 1972 년과 1991 년에 개정된 1964 년 민권법 제 7 조(Title VII of the Civil Rights Act of 1964) 위반이며 고용 차별로 소송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성희롱을 포함한 고용 차별 혐의는 규정 ACA-RA, *Nondiscrimination, Equity, and Cultural Proficiency* 에 명시된 대로 보고되어야 합니다

Title IX 는 일반적으로 학생들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이해되지만, 이 규정에 명시된 특정 상황에서는 직원 성희롱이 미국 교육부(U.S. Department of Education)가 해석한 Title IX 에 따라 조치될 수 있습니다. 2020 년 미국 교육부는 Title IX 의 성희롱 불만에 대해 Title VII 의 차별 의혹에 대한 대응 및 조사 프로토콜과 다른 대응 및 조사 프로토콜을 명시했습니다. Title IX 프로토콜은 이 규정에 책정되어 있습니다.

일부 형태의 성희롱은 범죄 행위로 이루어져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수퍼바이저를 포함한 직원은 에게 성희롱 또는 부적절한 성적 행동과 관련된 지침, 지원 및/또는 정보를 직원지원 프로그램(Employee Assistance Program-EAP), Office of Human Resources and Development(OHRD), Department of Office of District Operations, Student Welfare and Compliance 의 타이틀 IX 코디네이터에게 받을 수 있습니다.

### III. 정의

A. *성희롱(Sexual harassment)*은 1972 년과 1991 년에 개정된 1964 년 민권법 제 7 조(Title VII of the Civil Rights Act of 1964)와 Title IX of the Education Amendments Act of 1972 의 다음과 같은 위반입니다.

1. *성희롱은 개인이 원치 않는 성적 접근, 성적 호의/특혜 요청 및 기타 부적절한 언어, 서면 또는 신체적 성적 행위를 경험하는 경우, Title VII 에 따른 고용 차별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행위는 다음과 같은 경우, 성희롱을 행위에 해당합니다—*
  - a) 이러한 행위에 대한 복종을 명시적으로 또는 묵시적으로 개인의 고용 조건으로 할 경우. 또는,
  - b) 개인의 그러한 행위에 대한 복종 또는 거부가 해당 개인에게 영향을 주는 고용결정의 근본으로 사용할 경우. 그리고/또는
  - c) 그러한 행위가 개인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위협, 적대 또는 공격적인 업무환경을 부당하게 조성하는 목적 또는 결과를 초래할 경우
2. *성희롱은 만약 개인이 다음과 같은 경험이 하나 이상할 경우, U. S. Department of Education 의 해석인 Title IX 에 따라 조치가 가능합니다.*
  - a) MCPS 직원이 원치 않는 성적 행위 참여를 조건으로 MCPS 의 지원, 혜택, 서비스를 제공받거나,
  - b) 합리적인 사람이 결정한 원치 않는 행위가 너무 심각하고 만연하고 객관적으로 공격적이어서 Title IX 규정에 따라 장소, 행사, 상황으로 정의한 MCPS 교육프로그램 또는 활동에 MCPS 가 고소인과 피고인 모두와 성희롱이 발생한 상황에 대해 상당한 통제력을 행사하여 개인의 평등한 접근이 효과적으로 거부하도록 한 경우.
  - c) 미국 여성 폭력방지 법(U.S. Violence Against Women Act)에 정의한 "성폭행(Sexual assault)", "데이트 폭력(dating violence)", "가정 폭력(domestic violence)" 또는 "스토킹(stalking)"의 경우

3. *제삼자(third party)*는 MCPS 직원이나 학생이 아닌 활동에 참여하거나 현장에 있고 MCPS의 권한이나 통제 하에 있는 모든 사람을 의미하며, 여기에는 공급업체, 계약자, 코치와 자원봉사자, 멘토 그리고 교직원 및/또는 학생이 MCPS 건물에서 상호 작용하는 사람을 모두 포함합니다.

### III. 행정절차

#### A. 교직원에의 적용

1. Board Policyy ACI, *Sexual Harassment of MCPS Employees*; MCPS Regulation ACA-RA, *Nondiscrimination, Equity, and Cultural Proficiency*; 이 규정은 MCPS 직원과 관련된 성희롱 사건에 적용되며, 한 성별의 사람이 다른 성별의 사람 또는 같은 성별의 사람을 상대로 저지른 경우에 적용됩니다. MCPS 직원이 성희롱 행위를 하는 것은 법, 교육위원회 정책 및 MCPS 직원을 위한 MCPS 규정에 위배됩니다.
2. 성희롱 행위를 알아차리는 것과 바로 필요한 행동을 취하는 것은 관리자의 책임입니다.

#### B. 성희롱에 대한 불만 신고

1. MCPS 교직원은 성희롱을 받았다고 생각되는 즉시 사건을 신고해야 합니다. 제삼자가 성희롱을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2. 신고는 구도 또는 서면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3. MCPS 는 이와 같은 성희롱에 대한 직원 및 제삼자의 주장을 포함한 신고의 조사와 해결에 대해 적절한 법과 MCPS 의 책임에 따라 일관적으로 비밀을 유지, 조사, 적용합니다.
4. 사건을 신고하거나 신고에 참여 또는 조사에 협조한 개인에게 불리한 결과는 없습니다.

#### C. Title VII 성희롱에 대한 불만신고 사항 조사

1. Title VII 에 따른 성희롱 불만 사항은 직원 또는 제삼자가 양식 230-39, *Complaint of Discrimination or Workplace Bullying* 을 작성하여 보고하거나, DCI 에 직접 이메일(DCI@mcpsmd.org) 또는 적절한 경우, 무네를 DCI 에 회부할 학교장/수퍼바이저와 상의합니다.

2. Title VII 에 따른 성희롱 불만에 대한 조사는 MCPS Regulation ACA-RA, *Nondiscrimination, Equity, and Cultural Proficiency* 를 따릅니다.

D. Title IX 성희롱에 대한 불만신고 사항 조사

1. Title IX 성희롱에 대한 불만신고 사항의 조사요청은 고용인이 MCPS Form 0109.22 EGPS, *Title IX Discrimination Formal Complaint* 을 작성하여 DCI 에 이를 알릴 Title IX 코디네이터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TitleIX@mcpsmd.org)
2. 다음과 같은 Title IX 성희롱에 대한 공식 불만신고의 의무 기각 및 임의 기각을 금하고 있습니다:
  - a) 공식 불만신고의 의무적 기각
    - (1) Title IX 코디네이터는 다음의 경우 공식 불만신고를 기각해야 합니다.
      - (a) 만약 불만제기에서 주장되는 행위가 Title IX 성희롱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그 행위가 입증될 경우에도 해당; 또는
      - (b) 그 행위는 교육 프로그램/활동 범위 내에서 발생하지 않은 경우
    - (2) 공식적인 불만사항을 의무적으로 기각한다고 해도 Regulation ACA-RA, *Nondiscrimination, Equity, and Cultural Proficiency*; *MCPS Student Code of Conduct*; 또는 *MCPS Employee Code of Conduct* 의 조치가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 b) 공식 불만신고의 재량적 기각
    - (1) Title IX 코디네이터는 공식 불만신고를 다음의 경우 기각할 수도 있습니다-
      - (a) 신고자가 공식 불만신고를 철회하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Title IX 코디네이터에게 통지하는 경우 또는,

- (b) 대응자가 더 이상 MCPS 에 다니거나 재직 중이지 않을 경우, 또는,
  - (c) 구체적인 상황이 MCPS 가 공식 불만신고이나 주장에 대한 결정에 도달하기에 충분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을 방해할 경우.
3. 공식 불만신고를 접수하고 검토한 후, Title IX 코디네이터/지명자는 알려진 당사자에게 혐의에 대한 서면 통지를 제공하고 조사관을 지정합니다.
  4. 조사관은 책임에 따라 결정에 도달할 증거를 수집합니다. 당사자들은 진술, 목격자 및 기타 증거를 포함하여 조사관에게 연류된 증거나 해명 증거를 제공할 동등한 기회를 갖게 됩니다.
  5. 조사 종결 시 책임에 관한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피청구인이 해당 행위에 대해 책임이 없는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6. 조사 보고서 작성에 앞서 조사관이 각 당사자와 당사자 어드바이저에게 의혹과 직접 관련된 증거를 송부하는 증거 심사 기간이 있어야 합니다. 당사자들은 10 일 이내에 서면 답변을 제출해야 합니다.
  7. 증거 검토 기간이 끝나면 조사관은 서면 답변서를 검토하고 조사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8. 조사 보고서가 완료되면 당사자들과 당사자 어드바이저는 10 일 동안 보고서를 검토하고 서면 답변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9. 조사 보고서 검토 기간 후, DCI 디렉터는 조사 보고서와 서면 답변을 평가하고, 이 문서를 검토한 후 5 일 근무일 이내에 책임 결정을 내게 되는 OHRD 책임자(chief)에게 권명사항을 제출합니다. 결정은 각 당사자들에게 동시에 보내집니다.
  10. 주장되는 행위가 Title IX 에 따른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증거 기준의 우위성 하에 판단할 것입니다.

## E. Title IX 성희롱 결정에의 이의제기

1. OHRD 책임자의 책임결정은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최고 운영 책임자(chief operating officer-COO)/대리인에게 항소할 수 있습니다.
2. 이의제기는 결정이 이루어진 후 10 일 근무일 이내에 접수해야 합니다.
3.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책임 또는 공식적인 불만신고의 기각에 관한 결정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 a) 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친 절차상의 부정행위
  - b) 사안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해임의 책임이나 시기에 관한 결정 당시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없었던 새로운 증거
  - c) Title IX 코디네이터, 조사관 또는 의사결정자가 문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이해상충 또는 편견을 가지고 있을 경우.
4. 훈련된 COO 청문관이 배정됩니다.
5. 이의제기를 접수할 경우, COO 청문관이 이를 반대 측에게 서면으로 알립니다.
6. 양측 모두 결정에 관한 서면 진술서를 제출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7. 불만사항을 서면으로 접수한 후 10 일 근무일 이내에 COO 청문관은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
  - a) (c) 당사자가 서면으로 제출한 조사 문서 및 주장을 검토합니다;
  - b) 항소 결과와 결과의 근거를 설명하는 서면 결정을, 당사자에게 동시에 송부합니다. 그리고,
  - c) 양쪽 당사자들에게 결과를 알리고, 교육위원회 Policy BLB, *Rules of Procedure in Appeals and Hearings* 와 교육위원회의 결정에 30 일 달력일 이내의 이의제기에 관한 주법의 권리를 양쪽에게 알립니다.

## F. Title IX 성희롱 불만신고의 비공식적 해결방법

1. 책임에 관한 결정에 도달하기 전에 언제든지 당사자는 공식적인 불만 신고에 대한 비공식적인 해결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비공식 해결에의 참여는 자발적인 선택입니다. 양 당사자는 비공식적인 해결과정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며 서면으로 이를 동의해야 합니다.
3. 직원이 학생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에 대한 공식 불만신고를 해결하기 위해 비공식적인 해결절차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관련자료:

*Civil Rights Act of 1964*, Title VII; Title IX of the *Education Amendments Act of 1972*, as amended (34 C.F.R. §§ 106.44, 106.45);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ommission (EEOC) *Sexual Harassment Guidelines* (29 C.F.R. § 1604.11); *Violence Against Women Act of 1994*, 34 U.S.C. § 12291; Annotated Code of Maryland, Education Article § 7-424; Memorandum of Understanding<sup>1</sup>; *MCPS Student Code of Conduct*; *MCPS Employee Code of Conduct*

규정 변경사: 새규정, 2023년 2월 1일

---

<sup>1</sup> 전체 제목: 법 집행과 관련된 사건에 대한 보고 프로토콜은 2022년 4월 4일 *학교 기반 사건에 대한 Community Engagement Officer Program 및 기타 법 집행 대응에 관한 Montgomery 카운티 경찰서와 Montgomery County Public Schools 및 기타 기관 간의 양해각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양해각서-Memorandum of Understanding)*

# MCPS 차별금지 성명

Montgomery County Public Schools(MCPS)는 인종, 민족, 피부색, 조상, 출신국, 국적, 종교, 이민상태, 성, 성별, 성 역할, 성 표현, 성 취향, 가족 형태/부모 상태, 결혼 상태, 나이, 능력 상태(인지, 사회/정서, 신체), 빈곤, 사회경제적 상태, 언어, 또는 합법적이고 헌법적으로 보호되는 성향 또는 소속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차별은 우리 모두를 위한 형평성, 포용성, 수용을 창출, 육성 및 촉진하려는 우리 커뮤니티의 오랜 노력을 약화시킵니다. 교육위원회는 증오를 조장하고 학교 또는 교육구 운영 또는 활동에 상당한 방해로 일으킬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언어의 사용과/또한 이미지와 표시의 사용을 금지합니다. 자세한 안내는 교육위원회 정책 ACA, 차별금지, 평등 및 공평과 문화적 능력(Nondiscrimination, Equity, and Cultural Proficiency)을 봅시다. 이 정책은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중요하며 특히, 개인의 실제 또는 여겨지는 인적 특성으로 교육적 결과를 예측해서는 안 된다는 교육위원회의 신념을 단호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또한, 공평성이 내재적 편견, 정당화되지 않은 다른 관행, 교육과 고용의 기회의 평등을 저해하는 구조적, 제도적 장벽을 식별하고 해결하기 위한 사전조치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인식합니다. MCPS는 또한, 보이스카우트/걸스카우트와 다른 지정된 청소년 그룹에 평등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 MCPS 학생*에 대한 질문 또는 불평사항*  | MCPS 교직원*에 대한 질문 또는 불평사항*  |
|---|--|
| Director of Student Welfare and Compliance<br>Office of District Operations<br>Student Welfare and Compliance<br>850 Hungerford Drive, Room 55, Rockville, MD 20850<br>240-740-3215<br>SWC@mcpsmd.org | Human Resource Compliance Officer<br>Office of Human Resources and Development<br>Department of Compliance and Investigations<br>45 West Gude Drive, Suite 2500, Rockville, MD 20850<br>240-740-2888<br>DCI@mcpsmd.org |
| <b>1973년 504 장애법(Section 504 of the Rehabilitation Act of 1973)에 따라 조정이 요구되는 학생용</b>  | <b>미국 장애인법(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에 따라 조정이 요구되는 교직원용</b>  |
| Section 504 Coordinator<br>Office of Academic Officer<br>Resolution and Compliance Unit<br>850 Hungerford Drive, Room 208, Rockville, MD 20850<br>240-740-3230<br>RACU@mcpsmd.org                     | ADA Compliance Coordinator<br>Office of Human Resources and Development<br>Department of Compliance and Investigations<br>45 West Gude Drive, Suite 2500, Rockville, MD 20850<br>240-740-2888<br>DCI@mcpsmd.org        |
| <b>학생 또는 교직원*에의 성희롱 등, Title IX에 해당하는 성차별에 관한 조사나 불평사항</b>  |  |
| Title IX Coordinator<br>Office of District Operations<br>Student Welfare and Compliance<br>850 Hungerford Drive, Room 55, Rockville, MD 20850<br>240-740-3215<br>TitleIX@mcpsmd.org                   |  |

\*차별에 관련된 민원은 다음과 같이 다른 기관에 이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U.S.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ommission (EEOC), Baltimore Field Office, GH Fallon Federal Building, 31 Hopkins Plaza, Suite 1432, Baltimore, MD 21201, 1-800-669-4000, 1-800-669-6820 (TTY); Maryland Commission on Civil Rights (MCCR), William Donald Schaefer Tower, 6 Saint Paul Street, Suite 900, Baltimore, MD 21202, 410-767-8600, 1-800-637-6247, [mccr@maryland.gov](mailto:mccr@maryland.gov); 또는 U.S. Department of Education, Office for Civil Rights (OCR), The Wanamaker Building, 100 Penn Square East, Suite 515, Philadelphia, PA 19107, 1-800-421-3481, 1-800-877-8339 (TDD), OCR@ed.gov, 또는 [www2.ed.gov/about/offices/list/ocr/complaintintro.html](http://www2.ed.gov/about/offices/list/ocr/complaintintro.html).

\*\*본 통지는 개정된 연방 초등 및 중고등 교육법을 준수합니다.

안내서는 영어 이외의 언어와 미국 장애인 복지법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에 따른 대체 형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MCPS Office of Communications, 전화번호 240-740-2837, 1-800-735-2258 (Maryland Relay) 또는 [PIO@mcpsmd.org](mailto:PIO@mcpsmd.org)로 연락하여 요청합니다. 수화 통역 및 기타 특수 보조 등의 제반 시설이 필요한 경우는 MCPS의 Office of Interpreting Services, 240-740-1800, 301-637-2958 (VP) 또는 [mcpsinterpretingservices@mcpsmd.org](mailto:mcpsinterpretingservices@mcpsmd.org) 또는 [MCPSInterpretingServices@mcpsmd.org](mailto:MCPSInterpretingServices@mcpsmd.org)로 연락합니다.